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일 : 2016. 1.25.

정부는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직전년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 상한액의 2배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 1,000억원 이하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건설업의 경우 매출액이 2,000억원 미만인 중견건설사까지 수급사업자로서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편집자주)

하도급법 보호대상 확대(연 매출액 2000억원 미만 건설업체 포함)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제7조제4항, 제7조제5항)

(별표① 주된 업종별 연간매출액)

건설업의 경우 2,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급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수급사업자로 보도록 하며, 연간매출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아닌 경우에도 하도급대급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원사업자로 보도록 함

신·구조문대비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438호, 2015.7.24., 타법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33호, 2016.1.22., 일부개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2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상시고용 종업원 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자가 상시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수로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사업실적이 없거나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일 현재 상시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수로 한다. ④ ~ ⑧ (생략)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④ ~ ⑧ (현행과 같음)
〈신설〉	제7조의4(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의 연간매출액 기준) 법 제1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연간매출액을 말한다.
〈신설〉	제7조의5(원사업자로 보는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법 제13조제1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조원을 말한다.

[별표 1] 주된 업종별 연간매출액(제7조의4 관련)

위탁을 받는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	연간매출액
21. …….	
22. 건설업	2,000억원
23. …….	